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2(목) 10:00

제2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76호
- 나. 제 출 자 : 윤영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0. 3. 2.
- 라. 회부일자 : 2020. 3. 2.

2. 제안이유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공 제한 규정(안 제5조)
- 라. 환경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마. 실태점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0. 3. 2. ~ 3. 9.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업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4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 저감정책의 추진방향과 홍보, 교육·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됨
-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하도록 한 것은 민간부분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되며
- 안 제7조에서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의 지속적으로 시책을 펼쳐가기 위한 조치로 보임
- 안 제8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관련 규정으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과다사용으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대처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59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과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